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817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 기존 조례상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우수 지자체 견학, 주민자치위원, 강사 등의 교육, 연수 및 우수 자치센터의 시상 등 자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조례안 제7조제8항)
-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프로그램 개설에 주민참여와 주민 욕구 반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강료등의 징수를 의무화 시키는 반면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강료등의 감면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하여 원활한 수강료 관리를 도모함(조례안 제10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5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과 당연직 고문(시의회 의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균형있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함(조례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전화:450-6174, FAX:450-4278, 이메일:mydion8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전화: 450-61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삽입한다.

제4조 본문 중 “읍·면·동”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 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2.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연수,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타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결연) 행사 등
3.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발표회(경연대회) 등 우수 자치센터 시상

제10조의 제목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을 “수강료등은 별표 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제10조제6항 중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을 “따라 징수한 수강료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납부한 수강료등의 환불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치센터 이용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을 “1월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층이”를 “각층, 각 지역에서”로, “위촉하되”를 “위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문”을 “위촉직 고문”으로, “당해 읍·면·동”을 “해당 읍·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내지”를 “제4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징수 및 감면 기준

①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과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시설 사용	무료	운동시설 제외

② 수강료 징수기준(제10조제3항과 관련)

구 분	수 강 료 및 사 용 료	비 고
강좌 수강	월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운동시설 사용	월 20,000원 이하	

③ 수강료 등 감면기준(제10조제5항과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전액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액감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전액감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전액감면

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
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
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
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
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
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
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
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
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산
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
다)-----

----- 시설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④-----
----- 그
밖에 -----

-----.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
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
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
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
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
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
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
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시에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생략)

-----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등” -----

-----.

④-----
----- 해당 -----

-----.

⑤-----

----- 따라 -----
----- 수강료 등 -----

-----.

⑥-----

----- 10명 -----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수강료)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

⑧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2.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교육, 연수,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타 지자체 주민자치위원회와 교류(결연) 행사 등

3. 자치센터 운영 평가, 발표회(경연대회) 등 우수 자치센터 시상

제10조(수강료등) ①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수강료등은 별표 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

④수강료등-----

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수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 설>

제11조(이용등) ①·② (생략)

-----.

⑤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⑥----- 따라 징수한 수강료등은 -----

-----.

⑦----- 수강료등-----

----- 수강료등-----

-----.

⑧납부한 수강료등의 환불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강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서,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①·② (생략)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③자치센터 이용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 범위-----
-----.

②-----
----- 범위-----
-----.

제14조(보고) ①-----
----- 1월전-----

-----.

②-----
-- 수강료등-----

-----.

제16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제1항-----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해당 -----

-----.

1. 해당 -----

자

2. (생략)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③ -----

--- 각층, 각 지역에서 -----
-----위촉하여야
하며-----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고문-----
----- 해당 읍·면·동

-----.

⑥ (현행과 같음)

⑦-----

----- 있
고,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
의 임기에 한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4. (생략)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제19조(간사) ①-----
-----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4호부터 -----
-----.

1. 해당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

-----.

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범위-----
-----.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818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 규정을 정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각종 문서 서식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안 제2조)
- 수강료등의 사용원칙 및 수입·지출 공개 등을 정하여 건전한 회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함(시행규칙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 서식, 위촉장 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 양식을 정하여 주민자치센터 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시행규칙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군산시청)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전화:450-6174, FAX:450-4278, 이메일:mydion82@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육계(전화: 450-6174)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2조(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이용시간은 각 호의 시간 안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민원 행정실 내에 설치한 시설의 이용시간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1. 평 일 : 09:00 ~ 22:00까지

2. 토요일 : 09:00 ~ 18:00까지

②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면·동장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인근 읍·면·동과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참여주민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강좌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이용절차)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5조(수강료 등) ① 위원회는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결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② 수강료등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납부 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③ 수강료등의 환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수강료등의 사용원칙) 조례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비
2. 자치센터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3.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
4. 자치센터 공공요금 등 일반 수용비
5.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관련 비용
6. 조례 제11조제5항과 관련한 시설 보험료
7. 그 밖에 위원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 사용금지)

제7조(수강료등 수입·지출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수강료등의 운영에 대하여 반기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②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주민자치위원 2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의 문서보존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7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운영, 보조, 강의 활동 등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와 실비,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징수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이용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제10조(변상조치)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자치센터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

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1조(보고 등) 읍·면·동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별지 제4호 서식)
2. 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2조(주민자치위원 모집) 조례 제17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따른 모집공고는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공고, 게시, 읍·면·동 홈페이지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고, 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 읍·면·동장은 차기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5명~9명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4조(위촉장 교부)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위촉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원 위·해촉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소집)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운영 일지 등)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센터 종합운영일지(별지 제11호 서식)
2. 자치센터 프로그램 출석부(별지 제12호 서식)
3.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운영세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업			
	연 락 처			
	주 소			
취소사유				
환불신청액	금	원정(W)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군 산 시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p>				

----- 결 취 선 -----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환불액 결정 통보서

신 청 인		생 년 월 일	
환불결정액	금	원	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p>			

[별지 제3호 서식]

군산시 ○○○ 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운영개요

-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운영장소 :
- 운영 프로그램 : 개 강좌, 개반
- 프로그램 강사 : 명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수입	지출	집행잔액	비 고

- 수강료 수입내역

연번	프로그램명	수입금액	산출내역	비고

- 수강료 지출내역

연번	지출내용	지출금액	산출내역	비고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별지 제4호 서식]

000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 계획

I. 사업목적

II. 사업개요

III. 세부 추진 내용

가. 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명, 시간, 수강료, 강사명 등 포함)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모집인원	수강료	강사명	장소

나. 주민자치 기능 및 문화복지 편익 기능

다. 기 타

IV. 소요예산

항 목	예산액(원)	산출기초	비 고

V. 기타사항

VI. 기대효과

※ 세부 계획은 별도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000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서

- I. 총 평
- II. 운영내용
- III. 주요추진사항
1. 000000사업
 - 추진기간
 - 사업개요
 - 추진성과
 -
 2. 000000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모집인원	월평균 수강인원	수강료	강사명	장소

IV. 자치센터 운영관련 수입·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잔 액	비 고
분야별	금 액	분야별	금 액		

- V. 문제점 및 대책
- VI. 건의사항
- VII. 미담·수범사례
- VIII. 기 타
- ※ 세부 내용은 별도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천 공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
3.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담당직원 :)
4. 자격요건
 - 읍·면·동 관내 거주하거나 사업장 종사자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 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읍·면·동 관내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주민)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각1부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2년(2회 연임 가능)으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소정시간을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군산시 ○○읍·면·동장

<별지 제7호 서식>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추천(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소			학 력	
전화번호		직 업		
주요경력				
추천사유 (신청사유)				

위의 사람을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후보자로 추천(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천(신청)인 : (인)

군산시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위 축 장

주소 : 군산시 읍·면·동 번지

성명 :

귀하를 군산시 000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
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산시 00읍·면·동장

<별지 제10호 서식>

<표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회 (정기회, 임시회)】

군산시 00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별지 제10호 서식>

<내지>

제 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정기회, 임시회)

회 의 록

- 일 시 :
- 장 소 :

심의안건

- 1.
- 2.
- 3.

회의내용

○ 개최시간 :

○ 발언위원

- 사회자 : -----
-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동 장 : -----

.....

○ 폐회시간 :

○ 참석위원 : 명

-----, -----, -----, -----, -----, -----, -----, -----, -----

-----, -----, -----, -----, -----, -----, -----, -----, -----

○ 불참위원 : 명

-----, -----, -----, -----, -----, -----

○ 회의록 서명

- 위 원 장 (서명)
- 부위원장 (서명)
- 간 사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주민자치센터 종합 운영일지

결 재	담당자	담당	읍면동장

운영일자 : 년 월 일(요일)

프로그램 이용현황

(단위 : 명)

이용 구분	총 계		이 용 자 현 황									비고
			성 별			참 여 계 층 별						
	누계	당일	계	남	여	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 인	노인	기타	

※ 이용구분란은 시설(인터넷검색, 체력단련실, 강좌 등)과 프로그램별로 구분 기재

시설사용 현황

구 분	총계	성 별			시 설 별					
		계	남	여	계	○○	○○	○○	○○	○○
일계/누계	/	/	/	/	/	/	/	/	/	/

※ 시설별은 인터넷검색, 체력단련실, 강의실, 기타 읍·면·동별 시설 등을 구분하여 기재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

기타사항(운영상의 특기사항, 보도자료제공, 문제점 등)

-
-

※ 운영일지는 시설·일자별로 작성하며, 일반이용자 및 일시 이용자 경우 등 포함

※ 별도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서식에 준하여 만들어 사용

<별지 제13호 서식>

○○읍·면·동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서식)

현황

○ 위원회명 : 군산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원장성명 :

○ 위원구성 : 명 (남 명, 여 명)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직위	성명	성별	주소(00리/00동)	위촉일자	임기만료일자	비고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간사						
4	위원						
5	위원						
6	위원						
7	위원						
8	위원						
9	위원						
10	위원						
11	위원						
12	위원						
13	위원						
14	위원						
15	위원						
16	위원						
17	위원						
18	위원						
19	고문						
20	고문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 . .

군산시 ○○읍·면·동장(직인)

군산시 공고 제2012-825호

『군산시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4. 16.

군 산 시 장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를 도입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우리시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안 제4조제1호)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 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정비
(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회계과(전화 063-450-4271, 팩스 063-452-8161, 전자우편 : hee0151@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회계과 경리계(전화 063-450-4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군산시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을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통산”을 “합산”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호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생략)

이라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현행과 같음)

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2-3호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41조(포상금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포상금지급) 규정 안」에 의거
- 누수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지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와 포상금 신청, 지급등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으로 누수 포상금 지급 절차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제41조(포상금지급) 규정 분기별 1회 포상금 지급방법을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방법 변경하여 누수신고 활성화에 도모함(안 제41조)
- 종전의 누수 신고는 포상금 지급 방법이 본인이 직접신청, 본인

수령등 신고자가 불편하고 복잡하여 유명무실 하게 운영되어 이를 개선하여 누수 포상금 지급하고자 함(안 제41조)

3 의 견 제 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수도과(전화:450-4533, FAX:450-8177)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수도과 우수율제고계(450-4533)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중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는 “관경300밀리미터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경100밀리미터이상 : 4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같은조제2항제2호는 “관경100밀리미터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경100밀리미터미만(급수관으로서 계량기이전관) : 2만원 상당의 군산특산품(농,수산물)” 같은조제2항제3호및제4호는 삭제한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p> <p>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3호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2. 시장은 제1호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한다.</p> <p>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p> <p>1. 환경 300밀리미터 이상 : 5만원 상당의 물품</p> <p>2. 환경 100밀리미터 이상 : 3만원 상당의 물품</p> <p>3. 환경 50밀리미터 이상 : 2만원 상당의 물품</p> <p>4. 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1만원 상당의 물품</p>	<p>제4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p> <p>1.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수지 감독 공무원이 누수 신고된 공사 현장이 누수지로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p> <p>2. 삭제</p> <p>② 누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지급한다.</p> <p>1. 환경 100밀리미터 이상 : 4만원 상당의 <u>군산특산품(농,수산물)</u></p> <p>2. 환경 100밀리미터 미만(급수관으로서 계량기 이전관) : 2만원 상당의 <u>군산특산품(농,수산물)</u></p> <p>3. <삭제></p> <p>4. <삭제></p>

군산시 고시 제2012-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6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4월 6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나운동 867-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56호선)
 - 나. 명 칭 : 은파웨딩홀옆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기개설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고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총폭원)	연장 (m)	확폭면적 (㎡) (총 면적)	
도로	소로1-56	10	127	6	127	821.5	4 (10)	127	479.4 (1,300.9)	
계			127		127	821.5		127	479.4 (1,300.9)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4. ~ 201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운동	867-7	대	1,091	9.0	현진이	제주시 연동 279-2 벽강하이본@601	전북은행		근저 당
						박영현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1249-139			
2	나운동	870-2	대	539.5	128.7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6-1003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3-301			
3	나운동	870-1	대	523.7	53.6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3-301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6-1003			
4	나운동	863-13	대	870.5	92.6	안이실	군산시 조촌동 부향하나로@426	전북은행 군산시	군산시 금광동 삼성@2-403	근저 당
5	나운동	869-14	도	671.1	20.5	김주철				
6	나운동	869-2	대	368.3	57.3	김수환	익산시 남중동2가 364-1			
7	나운동	869-16	대	231.4	51.8	임옥수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86			
8	나운동	869-1	대	264.5	65.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			
계	8 필지			4,064.1	479.4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번	지장물		편입물건	편입 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운	870-2	상가	1동	190.08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 106-1003			
			수목	3주						
			화단	1식	2.34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3-301			
2	나운	870-1	수목	1주		정성호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106-1003			
			웬스	1식		김용현	군산시 나운동1255-8 현대@ 103-301			
3	나운	869-13	웬스	1식		안이실	군산시 조촌동 부향하나로@ 426			
4	나운	869-2	상가	1동	119.93	김주철	익산시 남중동2가 364-1			
			브릭담	1식	1.96					
5	나운	869-16	주택및 상가	1동	268.4	김수환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286			
			화장실	1동	6.02					
			브릭담	1식	47.85					
6	나운	869-1	상가	1동	149.355	임옥수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135			
			화장실	1동	7.2					

군산시 고시 제2012-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4월 6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대학교)
 - 나. 명 칭 : 군산대학교 시설확충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면적(m ²)		증축계획(m ²)				비 고
		건축면적	연면적	당 초		변 경		
				건 축	연면적	건 축	연면적	
총괄	군산대학교	80,351	249,270	65,097	202,945	65,303	203,274	
금회 변경 부분	공대부속공장	2,103	5,636	2,085	4,522	2,101	4,538	
	골프 학습장	933	988	932	837	932	960	
	학생테니스장 관 리 소	140	140	62	62	112	112	
	온 실	200	200	-	-	140	140	
	계	3,376	6,964	3,079	5,421	3,285	5,750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미룡동 산 68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대학교 총장 채정룡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93. 01 ~ 201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48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4월 13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소룡동 1662번지(군산 국가산업단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공단3폐기물처리장)
 - 나. 명 칭 : 작업장(토양정화)시설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 설 명	시설결정 면적(m ²)	실 시 계 획			비고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폐기물 처리시설	공단3 폐기물처리장	32,548	32,548	11,499	12,367	
계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565 우성아파트1/1705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엔아이티 대표 김주한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05. 08. ~ 2012. 3. 30
변경 2005. 08. ~ 2014. 3.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게재실음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4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정정 고시

「주택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04. 10.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지곡동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아파트신축공사

2. 사업주체

가. 지역주택조합

1) 명 칭 : 지곡동 현대엠코지역주택조합

2) 대표자 : 이 용 훈

3) 주 소 : 군산시 수송동 852-2번지, 청담빌딩 4층

나. 공동사업주체

1) 회사명칭 : 현대엠코주식회사

2) 대 표 자 : 손 효 원

3)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1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의외 63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나. 대지면적 : 20,975.00m²

다. 건축면적 : 4,567.0612m²

라. 연 면 적 : 68,240.8306m²

마. 건축규모 : 아파트 7동 16~21층, 507세대

- 전용 59.9726m² 124세대
- 전용 84.9545m² 171세대
- 전용 84.9844m² 68세대
- 전용 84.9574m² 144세대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 사업비 : 70,531,521천원

아. 사업기간 : 2012. 05 ~ 2014. 05

4. 설계도서 : 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주택법 제17조 1항에 의한 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건축과 ☎ 063-450-4228)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5	현대엠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일원	-	증)25,485	25,485	

나. 나.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결정 사유
신설	35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일원	25,485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공동주택 건설시 양호한 환경의 확보와 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

2. 2.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대로	2	11	30	주간선	990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전북고111 (‘96.6.29)	
변경	대로	2	11	30~33	주간선	990 (75)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대로2-9	일반 도로		전북고111 (‘96.6.29)	폭원확장
기정	중로	2	28	15	집산 도로	764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중로2-16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2	28	15~18	집산 도로	764 (93)	지곡동 광로2-3	지곡동 중로2-16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기정	소로	1	257	10	국지 도로	194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중로	3	64	12~13	집산 도로	194 (194)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기정	소로	2	603	8	국지 도로	194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2	603	8	국지 도로	194 (30)	대로 2-11	중로 2-28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폭원확장
폐지	소로	2	601	8	국지 도로	117	소로 2-760	소로 2-761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602	8	국지 도로	117	소로 2-760	소로 2-761	일반 도로	지곡 신시가지	군산고210 (‘96.6.1)	
폐지	소로	2	760	8	국지 도로	117	소로 1-257	소로 2-603	일반 도로		‘96.6.1	
폐지	소로	2	761	8	국지 도로	117	소로 1-257	소로 2-603	일반 도로		‘96.6.1	

* ()는 폭원 변경부분 연장임

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대로 2-11	대로 2-11	· 일부구간(L=75m) ·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변경	중로 2-28	중로 2-28	· 일부구간(L=93m) · 폭원확장(B=증 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변경	소로 1-257	중로 3-64	· 전체구간(L=194m) · 폭원확장(B=증 2m~3m)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변경	소로 2-603	소로 2-603	· 일부구간(L=30m, B=7.5m~8.0m) · 폭원 8m로 확장	· 기존 폭 8m 미확보 구간에 대한 폭원 8m확보	
폐지	소로 2-601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602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760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폐지	소로 2-761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부지로 편입	

다) 2)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0	제60공원	어린이공원	지곡동 43-10번지 일원	1,550	증)10	1,560	군산고210 (96.6.1)	

라)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0	제60공원	· 위치변경 - 지곡동 42-4 일원 → 지곡동 43-10번지 일원 · 면적변경 - 1,550㎡ → 1,560㎡(증 10㎡)	· 외부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및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을 공동주택부지 외곽으로 이동

나.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1BL	25,485	1-①	군산시 지곡동 40-1번지 일원	20,975	공동주택용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1-②	군산시 지곡동 43-10번지 일원	1,560	어린이공원(제60공원)
			1-③	군산시 지곡동 48-19번지 일원	2,089	도시계획도로(중로2-28)
			1-④	군산시 지곡동 40-11번지 일원	584	도시계획도로(중로3-64)
			1-⑤	군산시 지곡동 37-2번지 일원	199	도시계획도로(대로2-11)
			1-⑥	옥산면 당북리 952-1번지 일원	78	도시계획도로(소로2-603)

다.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1-①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폐율	· 23% 이하	조례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조례 250% 이하
		높 이	· 21층 이하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적용

라. 라.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허용구간	· 공동주택용지 진출입구 주변에 한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지정된 구간 이외지역에서의 차량출입은 불허함
도로확폭	· 공동주택용지의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로확폭 - 대로2-11호선 일부구간(L=75m) 확폭 : B= 증 3m - 중로2-28호선 일부구간(L=93m) 확폭 : B= 증 3m - 지정 소로1-257호선 전체구간(L=194m) 확폭 : B= 증 2m~3m - 소로2-603호선 일부구간(L=30m) 확폭 : B= 증 0m~0.5m

II.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실음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50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 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4. 16. ~ 4. 30.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188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변경 : 15건

지번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폐지 : 5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관련지번 변경 : 20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7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재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4월 13일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15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11호 외 5개노선)사업
 - 2) 명 칭 : 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분	노 선 명	시설결정		실시계획 변경인가						비고
				당 초			변 경			
		폭원 (m)	연장 (m)	폭원 (m)	연장 (m)	면적 (㎡)	폭원 (m)	연장 (m)	면적 (㎡)	
도 로	대로2-11	30	990	30	344	5,145	30	344	5,138	
	중로1-17	20	380	20	190	2,214	20	190	2,223	
	소로2-582	8	114	8	114	961	8	114	959	
	소로2-585	8	84	8	8	64	8	8	64	
	소로2-577	8	371	8	295	2,543	8	295	2,423	
	소로2-685	8	20	8	20	187	8	20	187	
계	6개노선		1,959		971	11,114		971	10,994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당초 군산시 조촌동 565-3 용경빌딩 2층
변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19 신안빌딩12층

- 2) 사업시행자 성명 : 당초 (주)민성디앤씨 대표 황종택
변경 (주)하나다울신타 대표 이병철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0. 7. ~ 2012. 12. 31.

변경 2012. 3. ~ 2014. 10.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별도열람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450-44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